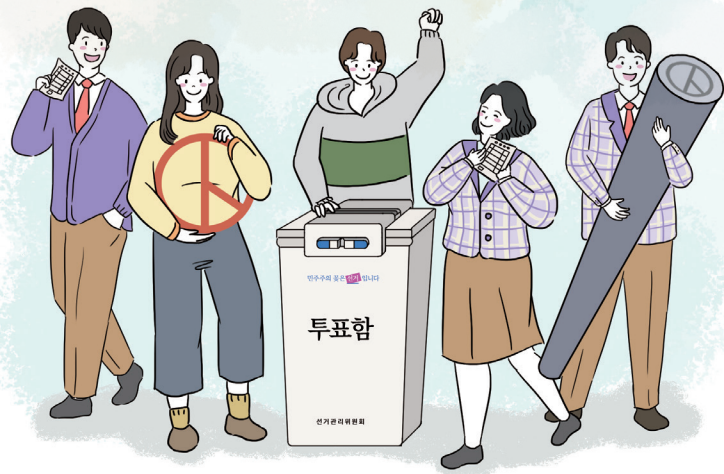


만 18세,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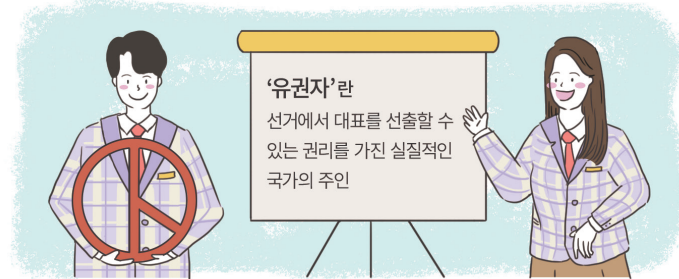
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
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,
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
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'선거권자'입니다.
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
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!

I 18세,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!

■ 유권자의 의미

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
사람들을 말합니다.



* 선거권 연령 기준

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
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. 즉, 2002년 4월 16일 이전
출생자(4월 16일 포함)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■ 유권자의 교양



■ 투표로 만드는 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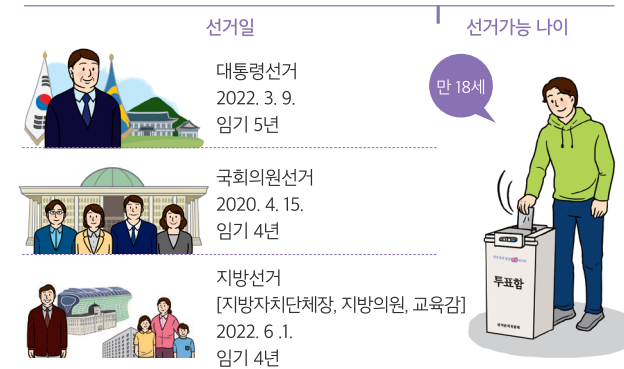
'나 하나쯤이야'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, 어떻게 여
러분의 삶을 바꾸고 결정할지 모릅니다.



투표 참여를 단지 선택할 권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'우리의 목소리 내기'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

II 선거, 어렵지 않아요!

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



■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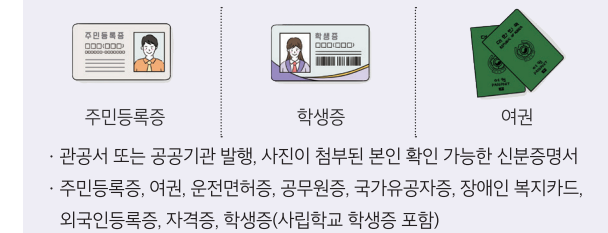


■ 투표, 이렇게 합니다!

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이며,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
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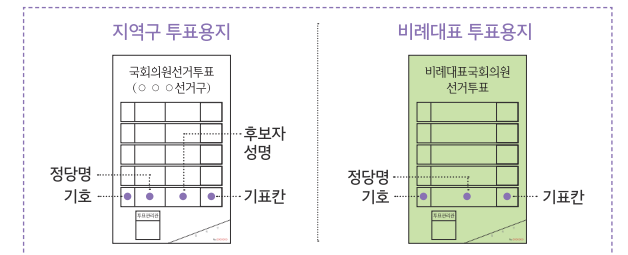


※ 신분증은 꼭 지참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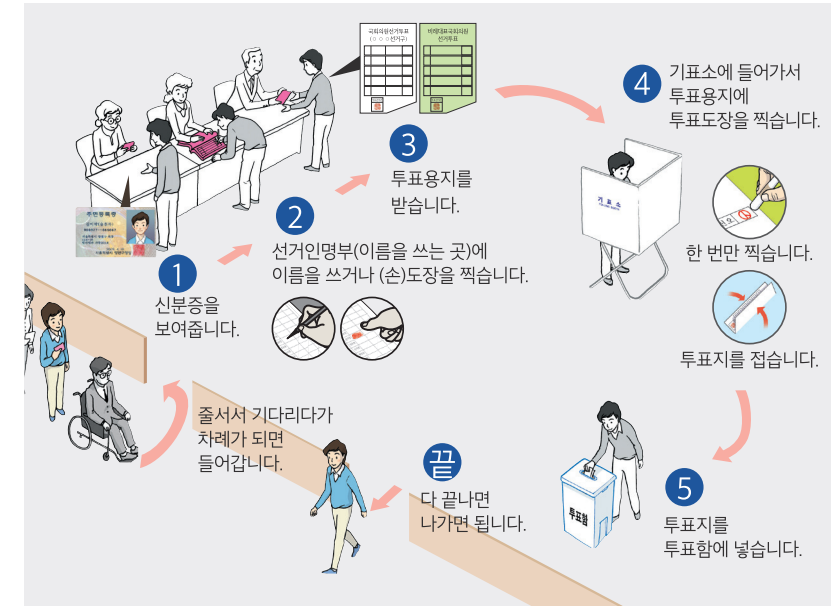


■ 투표용지

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에게
한 표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, 색깔이 다른 두
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합니다.



■ 투표하는 방법



■ 올바른 투표방법



